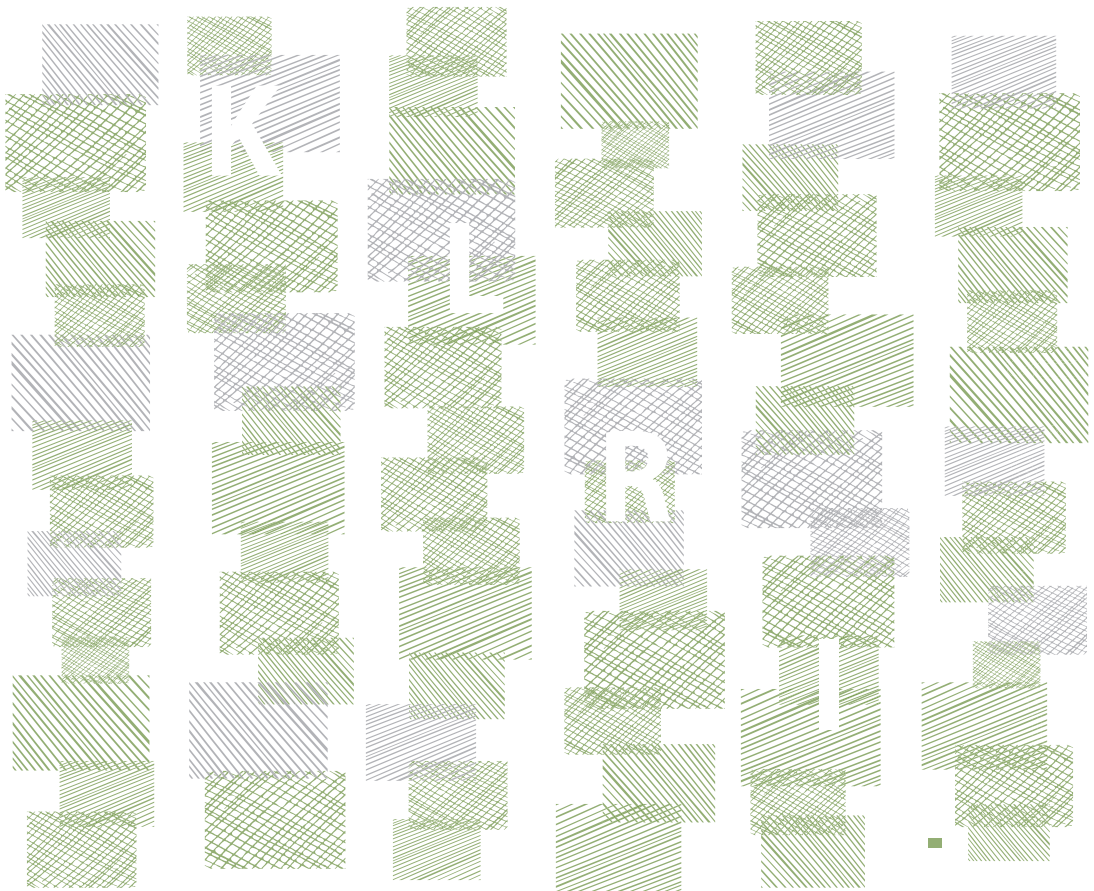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박 광 동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allowance for
read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laws

연구책임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20. 6. 30.

연 구 진

연구책임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심의위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연구감리위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국민 특정 제도, 신분 또는 자격증명 제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자료 제3차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법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 및 주민등록 법령상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열람 체계의 불명확화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자료의 열람·교부 허용범위 및 주민등록 법령상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입법적 측면에서의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II.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면서,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를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추세로 진행되어 왔음.
-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한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더 엄격히 관리·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함.

-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으로는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데이터 품질 원칙(data quality),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공개의 원칙(openness),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이 있음.
-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허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는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 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법령의 법체계 및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중 현재 행정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관련한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은 「주 민등록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근거를 두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 람신청에 관한 근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함께 규정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의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과 현행 제도 운용상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정보제공 가부 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Ⅲ. 기대효과

-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허용범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등록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임.
-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등록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임.

▶ 주제어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열람, 교부, 개인정보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a housing registration system, a national specific system, and a status or qualifications certification system.
- Currently, in relation to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Act, there is a problem of legal systemic conformity to the allowable range of third-party access and 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problems such as access to new generations and the uncertainty of the system to view the resident registration table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the legislative aspect of the scope of allowance for reading and 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e reading of all household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I. Main Content

- With regard to access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legislatively or judicially, read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s recogniz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trend has been to limit the viewing and 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within a range that is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Even in the case of read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with a character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public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in a way that is more strictly managed and restricted by applying the criteria of the eight basic principles of OECD privacy.
 - The criteria for the eight basic principles of OECD privacy are: Collection limitation, data quality, purpose specification, use limitation, and safety. security safeguards,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cope of allowance for read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are: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allowance for accessing and issuing third-party registration data, and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access system for resident registration transfer household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ordinance and restrictions on access by resident registration transfer households by foreigners.

- Regarding the clarification of the allowable scope of access to third-party access and 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access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currently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be directly regulated or ground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delegating only the details or procedures to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transfer system,
 -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grounds for requesting access by residents of resident registration by the law, which is stipulated by Article 14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nforcement Rules, while improving the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reading and issuanc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ist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There may be pros and cons for foreign residents' direct resident registration access, but it is appropriate to allow foreigners' property rights and allow them because of the current system operation.

III. Expected Effect

- The direction to revis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ill be suggested by presenting a plan to rearrange the legal system for the scope of allowance for viewing and issu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Data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The direction of amendment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will be suggested by presenting a pla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resident registration transfer system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Key Words** : Resident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ct, Inspection, Issuance, Personal Information

목차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5

I. 연구의 목적	17
II.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 21

I. 주민등록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	23
II. 주민등록자료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25
III.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	31
IV. 검 토	34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7

I.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현황	39
1. 현 황	39
2.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영 현황	41
II.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문제점	54
1.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필요	54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55

목차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법제 개선 방안 / 59

- I.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61
- II.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63

제5장 결 론 / 71

- 참고문헌 77
- 부 록 89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목적
- II. 연구의 범위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시민등록제도 중 거주등록제도이면서, 1) 개인의 일반적인 신분 관계 등록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한 등록으로 보거나, 2) 사실상 국가등록제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³⁾

[표1] 행정상 등록의 유형⁴⁾

유형	대표법률상의 등록 예
영업 규제와 관련된 등록	「식품위생법」 상의 등록
물건 특히 준부동산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상의 등록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된 등록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
특수한 자격과 관련된 등록	「변호사법」, 이나 「세무사법」 상의 등록
일반 사회활동과 관련된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잡지 등록

- 1) 김추린, 디지털화에 의한 주민등록의 제도변화 관계 연구: 일본, 독일, 영국, 한국의 비교 연구,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8, 1면.
- 2) 류광해,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법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2, 169면.
- 3) 진보넷, [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보인권, 2006. 4.17.(<http://act.jinbo.net/wp/3399/>(방문일: 2020.5.5))
- 4) 류광해, 앞의 논문, 169면을 도표화로 수정

그런데 주민등록제도는 위의 하나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거등록제도, 국민 특정제도, 신분 또는 자격증명 제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2] 국가의 신분등록과 주거등록제도, 신분증 제도와 특정번호제도⁵⁾

제 도	목 적	방 식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 : 주로 국가(법원) 에서 취급	신분 관계의 증명	*사건별 편제/인적 편제 *개인별 편제/가족별 편제/가 별 편제	인적 편제, 가(家)별 편제 방식의 호적부
주거등록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급	행정처리의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주거등록 없이 선거인 등록, 납세자 등록, 사회보장 수급자 등록 등 개별적으로만 등록 받는 경우와 일반적인 주거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등록제, 임의등록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무 적인 등록제도로 주민등 록제도
국민 특정 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급	행정처리의 목적 (데이터 식별자)	*특수 목적에 따른 특정 제도/ 일반적인 특정 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전 국민에 부여/원하는 자에 계만 부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 국민 고유번호제도인 주 민등록번호, 기타 납세 자 번호, 여권번호 등의 특수목적 특정 제도
신분 또는 자격 증명 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급	행정처리의 목적 (간편한 자격 또는 신분 확인)	*특수목적에 따른 신분증/일반 적 목적에 따른 신분증 *단일기능/통합기능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 원증 등의 특수목적 신 분증 제도, 일반적 목적 의 주민등록증

5) 이은우,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4.15., 10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 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⁶⁾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및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인적 자원 관리, 주민 복리 증진, 질서유지, 생활 편리성 제고 등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⁷⁾ 즉, 우리나라 법원은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그 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⁸⁾

또한,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와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규정에 따른다면 주민등록증에 공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⁹⁾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 및 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¹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 및 법제 개선이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령과 관련하여 첫째,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법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와 둘째,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열람 체계의 불명확화 등에 대해서 입법적 측면에서의 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7)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1.3, 3면.

8)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9) 류광해, “주민가족관계국가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30(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6., 95면.

10) 송희준 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2면.

II. 연구의 범위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의 주민등록자료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자료와 정보공개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 후,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 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의 현황 및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관련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해외 현황, 「주민등록법」의 변천 및 법제처 해석례 등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법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도출된 「주민등록법」 제29조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법 체계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범위의 명확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에 대한 법 체계적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한다.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 I. 주민등록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
- II. 주민등록자료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 III.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
- IV. 검 토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I. 주민등록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¹¹⁾ 즉, 주민 등록의 행정사무 효율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2가지 사항에 중점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행정사무의 효과적 처리가 주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 시부터 주민등록자료에 대한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규정(제24조)을 두고 있었다. 또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시에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새로이 규정하였다.¹²⁾

그 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속하여 주민등록자료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되어 왔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26)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3&ancYd=20130806&ancNo=11990&efYd=2014080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26)

[표3]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적시 규정 변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p>[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¹³⁾</p>	<p>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안 제24조)</p> <p>1)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p> <p>2)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p>	<p>[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¹⁴⁾</p>	<p>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p>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27&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7 호, 2016. 3. 29., 일부 개정] ¹⁵⁾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7 호, 2016. 3. 29., 일부개정] 16)	주민등록번호 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함.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종래부터 주민등록 자료 및 주민등록 번호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이는 곧 주민등록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II. 주민등록자료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주민등록자료는 정보와 연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보는 보호의 객체인 개인정보와 공개의 객체인 직무상 정보로 구분된다.¹⁷⁾ 이러한 개인정보와 직무상 정보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연관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등록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라는 개인정보 보호성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될 수 있다.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InfoP.do?lsiSeq=18201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InfoP.do?lsiSeq=18201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17) 고문현 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2017, 16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자료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되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과 일부 외국인이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데(제5조), 이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다만, 개인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1항제6호).

이러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의 법제에서도 동일하게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개인정보, 법인 등 정보, 국가안전 보장정보,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 심의·검토 등에 관한 정보, 행정기관의 사무·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정보 법상의 불개시 정보로 파악하고 있다.

[표4] 주요국의 공개정보법상의 불개시정보¹⁸⁾

사 항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개인정보	○	○	○	○	○	○
법인 등 정보	○	○	○	○	○	○
국가안전 보장정보	○	○	○	○	○	○
공공 안전 등에 관한 정보	○	○	○	○	○	○

18) 一般財団法人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諸外国における情報公開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 一般財団法人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2019, 201-202面.

사 항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심의·검토 등에 관한 정보	○	○	○	○	○	○
행정기관의 사무·사업에 관한 정보	○	○	○	○	○	○
그 밖의 정보	○19)	x	○20)	○21)	○22)	○23)

이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주요 국가의 입법례 등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사용의 엄격화 경향과 관련하여 주민등록과 개인정보와의 관계를 보면, 1962년 5월 10일 제정(1962년 6월 20일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자료의 제3자 열람·교부 범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의 행정사무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19)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0) 법률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 경우, 제출 시 개인의 공정한 재판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집행 기록 또는 정보, 유정(油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법률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

21) 장래에 공표가 예정된 정보,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여왕과 왕비 등의 통신, 비밀로 제공된 정보, 공개가 EU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정보 등.

22) 비밀리에 수집되고 제공된 정보로 비밀 취급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이 존속될 때, 경제 거래에서 연방의 국고적 이익 또는 사회 보험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성격을 가질 때 등.

23) 문학적·예술적 재산권의 대상이 된 경우, 법에 의해 보호된 다른 비밀.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542&ancYd=19620510&ancNo=01067&efYd=196206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26)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주민등록자료의 제3자 열람·교부에 대한 변천 과정을 보면, 2006년 3월 24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에서는 종래 산재하여 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였다(「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등). 그리고 이후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 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표5]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 변천

제·개정일	주요 내용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²⁵⁾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제5호마목·바목 신설).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일부개정] ²⁶⁾	- (신설) 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²⁷⁾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법 제29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9210호, 2008. 12. 26., 일부개정] ²⁸⁾	- 제39조(양벌규정)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82&ancYd=20160529&ancNo=14191&efYd=2016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35&ancYd=20110530&ancNo=10733&efYd=201108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0390&ancYd=20081226&ancNo=09210&efYd=200812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제·개정일	주요 내용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필요한"을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법률 제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법 제18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하고,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세대원에 게도 가능하도록 함.
[법률 제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³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18조의 5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법률 제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1조의3 신설).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8885&ancYd=20070511&ancNo=08422&efYd=200705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639&ancYd=20040322&ancNo=07201&efYd=2004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953&ancYd=20010126&ancNo=06385&efYd=200104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제·개정일	주요 내용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³³⁾	- 주민등록에 관련된 자료의 활용 및 열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법 제17조의 9 제1항 및 제17조의 12 제5항).
[법률 제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³⁴⁾	- 현재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함(제18조).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³⁵⁾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자료는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 주체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자료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14&ancYd=19971217&ancNo=05459&efYd=19981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15&ancYd=19910114&ancNo=04314&efYd=1991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542&ancYd=19620510&ancNo=01067&efYd=196206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Ⅲ.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래 「주민등록법」의 주요 변천 사항은 ① 등록 대상(거주불명자, 해외 체류자, 재외국민, 장애인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³⁶⁾ ② 주민등록 시스템(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 주민등록 전산 정보백업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주민카드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³⁷⁾ ③ 주민등록과 관련한 행정 제재 및 처벌 강화,³⁸⁾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한 법제 개선³⁹⁾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과 관련되어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에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⁰⁾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639&ancYd=20040322&ancNo=07201&efYd=2004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45&ancYd=20161202&ancNo=14286&efYd=201612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표6] 「주민등록법」의 변천 사항

제·개정일	주요 내용
[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⁴¹⁾

또한,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한 판시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 적용 조문의 명확성 필요, 대상 법률상의 위임규정에 의한 법적 근거의 확보 확인 필요, 「주민등록법」 상의 사항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깊음을 판시하고 있다.⁴²⁾ 특히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친부가 청구인의 위임 없이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에 대해서 명시하였다.⁴³⁾

[표7]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 판시 사항

사건 번호	주요 내용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헌재 2018. 1. 23. 2017헌마1346, 결정문)	청구인은 출생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친부의 자녀, 친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7. 1. 16.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인의 친부가 청구인의 위임 없이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 은 「주민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방문일: 2020.5.6)

42)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http://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방문일: 2020.5.6)

43)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http://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방문일: 2020.5.6)

사건 번호	주요 내용
[각하(2호),각하(4호)] 44)	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세대주의 직계혈족)뿐이고, 그 외에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목(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바목(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다목, 라목, 바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판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시사항으로는 주민등록 번호가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 개인 식별 내지 특정성의 요건 구비의 필요성⁴⁵⁾과 주민등록 번호 부정 유출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권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⁴⁶⁾

다만, 앞의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4)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http://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방문일: 2020.5.6)

45)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2100&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20EA%B0%9C%EC%9D%B8%EC%A0%95%EB%B3%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ljyl=01&newsimyn=Y&tabId=0)(방문일: 2020.5.6)

4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2100&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20EA%B0%9C%EC%9D%B8%EC%A0%95%EB%B3%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ljyl=01&newsimyn=Y&tabId=0)(방문일: 2020.5.6)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면서,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를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추세로 왔음을 알 수 있다.

IV. 검 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 자료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공개·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양자는 상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⁴⁷⁾

물론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사적인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로 분류하여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에 관한 정보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⁴⁸⁾ 이러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에서도 공적인 경우가 인정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정보 법상의 불개시정보로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사적인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로 분류하였을 때,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국민 특정 제도, 신분 또는 자격증명 제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정보는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주민등록의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자료 사용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자료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여 왔으며, 주민등록자료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등록 자료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이 되어 왔다.

47) 양태건,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관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⑥, 한국법제연구원, 2016, 4면.

48)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2면.

이러한 경향은 법률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법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한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관리·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에서 보아도 동일하다.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으로는 수집 제한의 원칙, 데이터 품질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을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운용에 적용하여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표8]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⁴⁹⁾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설 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개인 데이터 수집의 제한성, 적법하고 공정한 정보 수집 방법, 정보 주체의 적절한 인지 또는 동의 존재
2. 데이터 품질 원칙 (data quality)	사용 목적과의 관계성 및 범위의 적절성·완전성·최신성 있는 데이터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개인 데이터의 수집 목적 및 목적 변경의 명시성 및 범위의 적절성
4. 이용 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a)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개인 데이터의 명시된 목적 이외 공개·접근 가능성·사용 금지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개인 데이터는 손실 또는 권한 없는 접근, 파기, 사용, 수정 또는 공개에 대해 적절한 안전성 확보.

49) 이재웅,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Business Highlights, Deloitte Korea Review, 2019 No.12., 57면.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설 명
6. 공개의 원칙 (openness)	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주소를 비롯해 개인 데이터의 존재와 성질, 정보의 이용 목적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 공개 방침 존재
7. 개인 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p> <p>(a) 정보관리자로부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확인할 권리</p> <p>(b) 다음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p> <p>(i) 적절한 시간 내</p> <p>(ii) 유료라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p> <p>(iii) 적절한 방법으로</p> <p>(iv)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으로</p> <p>(c) (a) 항, (b) 항에 따른 요청이 거부된 경우, 그 사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p> <p>(d)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가 수락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정정·완성·수정할 수 있는 권리</p>
8. 책임성의 원칙 (accountability)	정보관리자는 상기 원칙들에 대한 실행 조치 준수 책임 존재.

즉,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제도 운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담보 확보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에 대한 사용 목적이 명확하도록 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서식이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로 작성되면서 보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에 명확하고 정교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과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에 대한 책임구조의 명확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I.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현황
- II.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문제점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현황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현황과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별하여 보고자 한다.

1. 현 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및 정부 24에 의한 교부 건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과 관련하여서는 1,300만 건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의 경우에는 960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 24(www.gov.kr/)에 의해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하여 열람보다는 발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9]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건수 (단위: 건)⁵⁰⁾

민원 서류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 등록표 등본·초본	78,468,768	16,233,103	13,190,062	12,744,961	13,081,780	13,542,867	9,675,995

50)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 연보, 행정안전부, 2019, 103면.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정부 24(www.gov.kr/)에서의 민원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민원인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정부 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0]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민원발급 건수 (단위: 건)⁵¹⁾

민원 서류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 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180,08 0,115	8,558, 056	10,72 2,319	13,12 1,180	15,52 7,917	18,87 3,106	21,79 3,005	20,30 6,695	20,17 0,236	23,23 4,681	27,77 2,920

(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12년, 2013년 및 2018년도에 12만 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높은 편이다.

51) 행정안전부, 앞의 책, 57면.

[표1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단위: 건)⁵²⁾

민원서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111,483

2.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용 현황

(1) 해외 현황 및 「주민등록법」 상의 신청서류 등

외국의 입법에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신분등록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의 식별, 신분증명, 동일성 확인 등 본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제도 운용 형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경우도 있다.

[표12] 주요국의 주민등록제도⁵³⁾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제 공 정 보	① 이름, ② 출생 년월일, ③ 남녀의 구별, ④ 주소	①PIN (Personal Identity Number를 보면 생년월일, 성별을 알 수 있다)	① 이름, 이전의 성(姓), ② 주소 정보(거주 도시, 주소, 이사 정보), ③ 주민	특정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① 이름, ② 학위 ③ 현주소, ④ 사망 정보,

52) 행정안전부, 앞의 책, 107면.

53) 総務省, 諸外国における住民登録制度について(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aityo_eturan/pdf/j_daityo_eturan06_s01.pdf), (방문일: 2020.5.12.).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p>② 성명, ③ 주소 정보 (주소, 재산, 거주 현·시·교구), ④ 시민권 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⑥ 출생지, ⑦ 국적, ⑧ 이주 정보, ⑨ 소제(消除) 정보, ⑩ 매장지. 또한 대량의 정보 제공을 위해 SPAR(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Tool)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SPAR에서의 정보 제공 내용은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에는 ① PIN, ② 이름, ③ 주소, ④ 배우자 ⑤ 과거 3년간의 기록 및 DM의 경우에는 ① 이름, ② 주소. 단, DM 관련해서는 주민으로부터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는 하지 않음.</p>	<p>ID 코드 (PIC), ④ 출생지, ⑤ 국적, ⑥ 언어, ⑦ 직업, ⑧ 배우자, 자녀, 부모, ⑨ 사망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만, 널리 공개되어있는 것은 ① 이름과 ② 주소. 또한 ① 주소 서비스(※), ② 다이렉트 마케팅, 시장 조사, 여론 조사 등 (역사적·과학적 조사 제외) ③ 각종 회원 명부 작성, ④ 가계 조사 내용은 탈퇴(opt out)가 가능함. ※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에 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주민등록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음.</p>	<p>⑤ 출생지 및 생년월일, ⑥ 이전의 성명, ⑦ 혼인 여부, ⑧ 국적, ⑨ 이전 주소, ⑩ 전입·전출 기일, ⑪ 법적 대리인, ⑫ 사망 장소와 날짜가 공개됨. (단, ⑥ ~ ⑫는 정당한 이해 관계자에게만 공개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① 이름(氏), ② 학위, ③ 연령, ④ 성별, ⑤ 국적, ⑥ 베를린의 현주소와 이전 주소, ⑦ 전입·전출 날짜, ⑧ 혼인 여부, ⑨ 미성년자인 아이는 지표에 의해 추출된 자에 대한 ① 이름, ② 학위 ③ 베를린의 현주소와 이전 주소, ④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p>
청구주체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누구라도 가능. 단, 관계자 및 관공서는 열람 가능 항목이 많음

	일 본	스웨덴	핀란드	독 일(베이런 주)
심사 방법	<p>원칙적으로 ① 청구자의 성명 및 ② 주소, ③ 청구에 관한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p> <p>또한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명백한 때 또는 열람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청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 거절함.</p>	<p>공공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p>	<p>「주민정보법」에서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p>	<p>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 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의무화.</p>
방법	<p>각 시·군·촌에 따라 취급이 다름</p>	<p>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가능</p>	<p>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서면 또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p>	<p>공개 방법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서면 또는 상황에 따라 구두 답변도 허용)</p>

예컨대,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베이런 주) 등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 등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된 예도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서도 주민등록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청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의 「주민등록법」에서도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는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 이용 목적이 명확하고, 주민등록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정보 열람·교부가 가능하다.

(2)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인과 신청서류 등(규칙 별표)

주민등록자료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세대 명부 또는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열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방식으로 제공된다.

[표13] 주민등록자료 자료 제공 방식

자료 제공 방식	근거법령	제공되는 자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주민번호 변경 이력, 개인 주소변동사항, 병역 사항 등 개인에 대한 기록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대에 관한 기록
세대 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명부 : 특정 행정구역에 주민 등록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색인 부 - 전출·입자 명부 : 특정 행정구역에 일정 기간 전출·입한 사람을 기록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성)과 전입 일자, 등록 구분 등을 기록

현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표 14]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인과 신청서류 등 54)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신분증명서
3. 법 제29조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	-	전자문서·FAX·우편신청 시 필요 없음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공무원증(사본첨부)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용 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	“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필요 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원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대장 사본 (필요 시)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5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무편람, 행정안전부, 2019, 170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표]제출 서류 등(제13조제1항 전 단 관련),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AJAX>)(방문일: 2020.6.1)

(3)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법제처 해석례 및 법원의 판결

1)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와 관련하여(안건번호 19-0267),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등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한 다양한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례의 공통적 기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등은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15]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법제처 해석례

질의 요지	해석례
<p>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입한 경우(안건번호 11-0729)⁵⁶⁾</p>	<p>-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음</p>

55)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894¤tPage=1&keyField=1&keyWord=19-0267&sort=date)(방문일: 2020.5.6)

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입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110¤tPage=1&keyField=6&keyWord=11-0729&sort=date)(방문일: 2020.5.6)

질의 요지	해석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에 대한 질의(안건번호 14-0753) ⁵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자료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문서는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7-0167) ⁵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안건번호 17-0404) ⁵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

57)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8138¤tPage=1&keyField=1&keyWord=14-0753&sort=date)(방문일: 2020.5.6)

58)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1335¤tPage=1&keyField=1&keyWord=17-0167&sort=date)(방문일: 2020.5.6)

59)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6176¤tPage=1&keyField=1&keyWord=17-0404&sort=date)(방문일: 2020.5.6)

질의 요지	해석례
	<p>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9 해석례 참조), 법무사가 소송·비송사건·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 신청할 수 있음</p>
<p>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 19-0267)⁶⁰⁾</p>	<p>-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p>
<p>「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안건번호 19-0267)⁶¹⁾</p>	<p>-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한다고 볼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p>

60)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894¤tPage=1&keyField=1&keyWord=19-0267&sort=date)(방문일: 2020.5.6)

61)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Emp/422106?schKeyword=%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mode=all&pageIndex=1>)(방문일: 2020.6.1)

2) 법원의 판결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시사항은 2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⁶²⁾ 및 둘째,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안 등이 있다.⁶³⁾

위의 판결의 공통적인 사항은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⁶⁴⁾ 및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 제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 긍정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⁶⁵⁾

[표 16]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법원 판결

주요 사항	판결 내용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62)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손해배상(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3262&q=2007%EB%82%98279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방문일: 2020.5.6)

6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주민등록법 위반](<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7850>)(방문일: 2020.5.6)

64)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손해배상(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3262&q=2007%EB%82%98279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방문일: 2020.5.6)

65)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주민등록법 위반](<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7850>)(방문일: 2020.5.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⁶⁶⁾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공정)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⁶⁷⁾

(4) 유사 제도의 열람·교부 범위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범위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과 비슷한 제도적 운영을 하는 신분 관계 확인 공적 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교부 범위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범위에 대한 적합성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과 비슷한 제도적 운영을 하는 신분 관계 확인 공적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인감증명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감증명법」 제1조).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6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손해배상(기)](https://glaw.scourt.go.kr/wsj/panre/sjo100.do?contId=1983262&q=2007%EB%82%98279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blId=)(방문일: 2020.5.6)

67)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주민등록법 위반](<http://www.law.go.kr/LSW/preclnfoP.do?mode=0&precSeq=167850>)(방문일: 2020.5.6)

은 본인 및 일정한 자(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인,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 3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둘째,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부동산 등기 사항의 열람 및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셋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표17] 주민등록 자료 유사 제도의 열람·교부 범위

법률명	규정 내용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⁶⁸⁾

6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6)

법률명	규정 내용	
「인감증명법」	제14조의 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p>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⁶⁹⁾</p> <p>*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⁷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p>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⁷¹⁾</p>

69)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6)

70)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ptninfSeq=132314&chrClsCd=010202&ancYnChk=0>)(방문일: 2020.5.6)

7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searchId0>)(방문일: 2020.5.6)

법률명	규정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⁷²⁾	<p>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p>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p>③ ~ 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p> <p>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p>

7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방문일: 2020.5.6)

이와 같이 주민등록과 비슷한 제도적 운영을 하고 있는 신분 관계 확인 공적 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교부 범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열람·교부 규정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열람·교부 규정은 법 체계적인 조화를 중시하면서, 범위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 규정에 대한 법 체계적인 조화 및 범위 규정의 엄격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II.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문제점

1.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필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2년 5월 10일에 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추상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 제29조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가 엄격화 되었으나,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규정의 추상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규정의 추상성 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주민등록법」 및 하

위 법령에서 허용요건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주민등록자료의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 정비 및 「주민등록법」 상의 열람 범위 불일치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법 체계의 문제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주민등록표 열람의 일부로 보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열람허용 범위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의 주민등록표 열람 허용 범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대상은 아니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공매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대상자이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주택조합, 대상 물권지를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허용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지번을 지정하여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세대 명부는 ‘열람’만 가능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를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면 세대 명부도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하는 등⁷³⁾ 법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를 가공한 전산 정보자료이므로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산 정보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면 제한 없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 주민등록 대상자 중 외국인을 예외로 하고 있고(「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주택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⁴⁾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담보물권 설정 등에

73)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행정안전부, 2018, 178면.

7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사용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입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거주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외국인에 대한 주소·인구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거주하는 임차건물의 법원 경매 시에도 외국인은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제3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위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⁷⁵⁾

75) 정진호, [단독]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 중앙일보, 2019.8.3. (<https://news.joins.com/article/23543035>)(방문일: 2019.6.8.).

제4장

법제 개선 방안

- I.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 II.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제4장

법제 개선 방안

I.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7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7가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예외적인 경우 중 종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제6호)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주체에게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제시가 있었다.⁷⁶⁾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7가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예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제1호)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 등도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76) 양태건, 앞의 책, 37면.

이에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 규정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및 하위 법령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제1호)를 보면, “공무상 필요”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무상 필요”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려면 그 내용을 법에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공무상 필요’를 유형화하여 표현하기 어렵고, 현행법에서 “공무(公務)”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다른 논란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에서만 특별히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를 보면, “공익상 필요”의 범위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 및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제3호)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법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관련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근거를 두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이하에 두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II.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 범위 제한 근거의 명확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과 관련하여 대상자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대상은 아닌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예: 공매진행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대상자이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주택조합, 대상 물권지를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자 등)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임도 없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 범위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에 관한 근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절차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주민등록표 열람에 포함되나, 열람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열람 허용범위를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별도로 정하는 방안이 있다. 즉,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열람이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부정 열람에 대한 벌칙”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에는 우선,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 일지만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 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을 신설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별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제2항의 특별규정인 것처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한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열람에 대한 근거를 별도의 항에서 두고,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 범위의 명확화

현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주로 재산권 관련 행사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 그리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표를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세대 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이를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물건소재지의 전출입 정보를 세대명부·전출입자 명부로도 열람

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⁷⁷⁾ 중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5호의 저장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에게 신청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전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안)」 제30조의2)고 규정하여, 저장권설정등기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기관이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장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의해서 해당 물건소재지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입법 실익이 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0조에서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전산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 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주민등록법」 제30조제2항).

이때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주민등록법」 제30조제3항).

이처럼 전산 자료라는 자료 이용방식의 차이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구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7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9721] 「주민등록법(안)」(맹성규 의원 등 10인)(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V9A0M4L1P0L1N3P5F6Z2N3D3W3A0)(검색일: 2020.6.14)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산 자료 제공 허용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를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법」 제30조제2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30조제2항에서 “전산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단서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면, 단순히 범위만 달리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본문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조문 제목을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라고 표시하고, 조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서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면서 동일 항에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교부 등의 신청 서식 규정과 일괄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은 동일 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교부 등의 신청 서식 규정과 일괄신청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참조).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교부 규정 내용 및 제도 구축 이행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의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의 문제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 보호와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서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다만, ①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

외국인의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허용에 대해서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외국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직접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 간의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정보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주민등록상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에게 불특정 주민의 거주 정보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는 외국인이 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내역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의 직접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정보제공 가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외국인을 적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별개의 내용이므로 신설할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제3항을 동조 제2항의 특별규정인 것처럼 연계시키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열람 및 교부에 대한 근거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에서 두고, 이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 열람이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인용하는 형식으로 입법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주민등록 자료 및 주민등록 번호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종래부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으며,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이 강한 주민등록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주요 국가의 입법례 등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변천 과정이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 법제처의 해석례 등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즉,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법제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등은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자료 열람·교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한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도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더 엄격히 관리·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의 열람·교부 허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법령의 법 체계 및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과 관련하여 대상자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관련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근거를 두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허용범위를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별도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에 관한 근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 허용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0조에서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산 자료라는 자료이용방식의 차이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호의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구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산 자료 제공 허용 범위를 별도 명시하는 경우를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조문 제목을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라고 표시하고, 조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서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일괄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과 현행 제도 운용상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정보제공 가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설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외국인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I. 국내의 문헌

- 고문현 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2017.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1.3.
- 김추린, 디지털화에 의한 주민등록의 제도변화 관계 연구: 일본, 독일, 영국, 한국의 비교 연구,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8.
- 송희준 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양태건,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관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⑤,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 연보, 행정안전부, 2019.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행정안전부, 2018.
- 류광해,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법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2.
- 류광해, “주민가족관계국가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30(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6.
- 이은우,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4.15.
- 이재웅,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Business Highlights, Deloitte Korea Review, 2019 No.12.

一般財団法人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諸外国における情報公開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
一般財団法人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2019.

II. 인터넷 자료(신문 등)

진보넷, [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보인권, 2006.4.17.(<http://act.jinbo.net/wp/3399/>(방문일: 2020.5.5))

정진호, [단독]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 중앙일보, 2019.8.3.(<https://news.joins.com/article/23543035>)(방문일: 2019.6.8.).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106?schKeyword=%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mode=all&pageIndex=1>)(방문일: 2020.6.1)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894¤tPage=1&keyField=1&keyWord=19-0267&sort=date)(방문일: 2020.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6176¤tPage=1&keyField=1&keyWord=17-0404&sort=date)(방문일: 2020.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1335¤tPage=1&keyField=1&keyWord=17-0167&sort=date)(방문일: 2020.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8138¤tPage=1&keyField=1&keyWord=14-0753&sort=date)(방문일: 2020.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110¤tPage=1&keyField=6&keyWord=11-0729&sort=date)(방문일: 2020.5.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894¤tPage=1&keyField=1&keyWord=19-0267&sort=date)(방문일: 2020.5.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2100&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20%EA%B0%9C%EC%9D%B8%EC%A0%95%EB%B3%B4&nq=&w=panre§ion=panre_tot&s

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방문일: 2020.5.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2100&q=%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20%EA%B0%9C%EC%9D%B8%EC%A0%95%EB%B3%B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방문일: 2020.5.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손해배상(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3262&q=2007%EB%82%98279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방문일: 2020.5.6)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주민등록법 위반](<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7850>)(방문일: 2020.5.6)

総務省, 諸外国における住民登録制度について(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aityo_eturan/pdf/j_daityo_eturan06_s01.pdf),(방문일: 2020.5.12.).

Ⅲ. 참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3&ancYd=20130806&ancNo=11990&efYd=2014080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27&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56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01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방문일: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542&ancYd=19620510&ancNo=01067&efYd=196206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82&ancYd=20160529&ancNo=14191&efYd=2016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35&ancYd=20110530&ancNo=10733&efYd=201108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0390&ancYd=20081226&ancNo=09210&efYd=200812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8885&ancYd=20070511&ancNo=08422&efYd=200705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639&ancYd=20040322&ancNo=07201&efYd=2004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953&ancYd=20010126&ancNo=06385&efYd=200104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14&ancYd=19971217&ancNo=05459&efYd=19981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15&ancYd=19910114&ancNo=04314&efYd=1991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542&ancYd=19620510&ancNo=01067&efYd=196206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639&ancYd=20040322&ancNo=07201&efYd=2004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45&ancYd=20161202&ancNo=14286&efYd=201612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411&ancYd=20060324&ancNo=07900&efYd=200609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2420&ancYd=20090401&ancNo=09574&efYd=2009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0.5.6)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http://search.ccourt.go.kr/thr/pr/thr_pr0101_P1.do)(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표]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 단 관련),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AJAX>)(방문일: 2020.6.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undefined>)(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ptninfSeq=132314&chrClsCd=010202&ancYnChk=0>)(방문일: 20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searchId0>)(방문일: 2020.5.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B8%EA%B0%90%EC%A6%9D%EB%AA%85%EB%B2%95#>)(방문일: 2020.5.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목 차

I.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분석	93
1. 주민등록법 제29조 개정 사항	93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95
3. 주민등록법 제29조 참조 조문	104
4. 주민등록법 제29조 판례	105
II. 인감증명법	109
1. 인감증명법 개정 사항	109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사항	111
3. 인감증명법 법제처 해석례	116
4. 인감증명법 참조 조문	119
5. 인감증명법 판례	119
III. 서명확인법 조사 분석	125
1. 서명확인법 개정 사항	125
2. 서명확인법 법제처 해석례	134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134
4. 서명확인법 판례	139
5. 국회법률안	139
IV. 부동산등기법 조사 분석	140
1. 부동산등기법 (개정 사항 없음)	140
2. 부동산등기법 법제처 해석례	140
3. 부동산등기법 참조 조문	140
4. 부동산등기법 판례	141
V. 개인정보 보호법 조사 분석	143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143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68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180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181
5. 개인정보 보호법 참조 조문	187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190

I.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분석

1. 주민등록법 제29조 개정 사항

주민등록법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주민등록법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p> <p>1. ~ 4. (생략)</p> <p>5. 다음 각 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p> <p>가. ~ 라. (생략)</p> <p><신설></p> <p><신설></p> <p>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p> <p>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p> <p>③ (생략)</p> <p>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p> <p>⑤ ~ ⑨ (생략)</p>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 <2009.4.1, 2016.5.29></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p> <p>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p> <p>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p> <p>7. -----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 <2016.5.29></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주인등록법 [법률 제921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주인등록법 [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주인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척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p> <p>6. 7. (생략)</p> <p>③ ~ ⑤ (생략)</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인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인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p> <p>6. 7.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장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p> <p>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p> <p>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p>①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p>	<p>□ 질의요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p>	<p>□ 회답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p>	<p>□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중략) 1~7호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별표 2에서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제1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제2호),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제3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2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별표 2의 제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따르면 이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무사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대리를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p>	<p>□ 안건번호 11-0729 □ 회신일자 2011.12.29. □ 제29조 제2항 일부 개정 사항 표시 ②항 현행과 같음. 1~4호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라 같음.</p> <p>다.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p>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1110&currntPage=&keyField=6&keyWord=11-0729&sort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date			<p>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임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교부 신청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바, 이러한 임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임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p> <p>※ 법령창비권고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임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 정한다) 7호 현행과 같음.</p>
②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p>	<p><input type="checkbox"/> 회답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p>	<p><input type="checkbox"/>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중략)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제4호기목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p>	<p><input type="checkbox"/> 안건번호 14-0753</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담	이 유	비 고
<p>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do?mid=a10106020000&cs_seq=1011110&currentPage=1&keyField=6&keyWord=14-0753&sort=date)</p>	<p>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범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복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p>	<p>「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범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복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범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복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p>③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p> <p>(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d=a10)</p>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p> <p>「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p>	<p><input type="checkbox"/> 회 답</p> <p>「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유</p> <p>「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거나(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p> <p>이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1~7호…(중략)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p>	
			<p>「민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소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제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안건번호 17-0167</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106020000&cs_seq=101110¤tPage=1&keyField=6&keyWord=17-0167&sort=date	<p>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公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p>	<p>회답</p>	<p>이 유</p>
			<p>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중략) 1~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은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항 제7호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할 실의 이 없어지는 등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④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p> <p>법무사가 소송 · 비송사건 · 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회답</p> <p>법무사가 소송 · 비송사건 · 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 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유</p> <p>「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중략)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으로 하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사건 · 강제집행 등 사권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명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권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및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제4항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등기 ·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8항에서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p>	<p>안건번호 17-0404</p>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106020000&cs_seq=101110¤tPage=1&keyField=6&keyWord=17-0404&so rt=date			<p>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무사가 소송·비송 사건·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제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책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이하 “위임인”이라 함)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p> <p>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서는 “기관 명”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제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증명지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기관에 소속된 사원이 기관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는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범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벌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령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p>
			비 고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p>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9 해석례 참조), 법무사가 소송·비송사건·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도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한편,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 10. 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3자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일 뿐, “신청주체”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p> <p>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무사가 소송·비송사건·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⑤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p>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각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 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p>	<p><input type="checkbox"/> 회답 이 사연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 (본문)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단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p> <p>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p>	<p><input type="checkbox"/> 안건번호 19-0267</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110¤tPage=1&keyfield=6&keyWord=19-0267&sort=date	참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p>등락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입니다.</p> <p>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관린 법령에 따른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9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p> <p>한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p>	

2. 주민등록법 제29조 조사 및 분석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p>※ 법령정비 권고사항</p> <p>「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p>	
3. 주민등록법 제29조 참조 조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p>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p> <p>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2017. 9. 19.></p> <p>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 8. 13.></p> <p>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7관 명)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p>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와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3. 주민등록법 제29조 참조 조문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자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p> <p>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직로 하거나, 공무원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직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2016. 12. 30.></p> <p>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9., 2016. 12. 30.></p> <p>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p> <p>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p> <p>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대하여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p>

4. 주민등록법 제29조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비고
<p>① 수원지법 2008.4.3.선고 2007나2791 판결 : 상고</p> <p>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1078</p>	<p>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에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p>	<p>【전문】 【원고, 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4. 선고 2006가소269170 판결 【변론종결】 2008. 3. 20.</p>	<p>【이유】 1. 기초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번 생략)○발과 B동 지층 01호 거주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6. 8. 22.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장에 대해, 원고 작성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고 주민등록 전입세에 열람 신청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은 위 주소 거주자가 화물용 차량을 원고의 집 창문 쪽에 주차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인 사실, 위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소외인은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발간의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p>	

4. 주민등록법 제29조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비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할 사내.	<p>【주문】</p> <p>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원고의 청구물 모두 기각한다.</p> <p>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p>	<p>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p> <p>가. 주장</p> <p>피고는 원고가 주거 평온의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 열람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열람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위 시행규칙과 거부행위는 헌법 내지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인 것이고, 이러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주거 평온의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권, 이와 관련된 있는 공무원직 복직권, 명예권 내지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그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 1,500만 원피해구제권 방해로 인한 지하층 주거 월 차임 상당액 30만 원 + 공무원 급여 12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의 합계 550만 원 상당이다.</p>	
		<p>【청구취지 및 항소취지】</p> <p>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다).</p>	<p>나. 판단</p> <p>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3, 4호,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4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거래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행정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p> <p>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원고의 위 열람 신청을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의</p>	

4. 주민등록법 제29조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비고
<p>②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http://www.law.go.kr/LSW/preInfoP.do?mode=0&preSeq=167850</p>	<p>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부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를 대리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장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차 丙은 甲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p>	<p>【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문】</p>	<p>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으로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업무담당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업무담당자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p> <p>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p>	
			<p>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의 1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의 1을 대리하여 공소의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의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p>	

4. 주민등록법 제29조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비고
	<p>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p>	<p>상고를 기각한다.</p>	<p>에서 망 공소의 2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의 2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공소의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의 1에 대한 채권을 망 공소의 2에 대한 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및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 공소의 2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 비교적 간변하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소의 1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소송 비용·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의 2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사정 등을 알 수 있다.</p> <p>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p> <p>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p> <p>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II. 인감증명법

1. 인감증명법 개정 사항

<p>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018호, 2015. 1. 20., 일부개정]</p>	<p>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 1. 6., 일부개정]</p>
<p>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捺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직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지직서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p> <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p> <p>----- 포함한다)</p> <p>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捺印)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p>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p> <p>-----</p>
<p>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p> <p>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중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p>

인감증명법 [법률 제13018호, 2015. 1. 20., 일부개정]	인감증명법 [법률 제13727호, 2016. 1. 6., 일부개정]
<p><신 설></p>	<p>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p>
<p><신 설></p>	<p>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사항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p>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인감을 신고한 자기급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2. 인감을 신고한 자기비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인감을 신고한 자기급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2. 인감을 신고한 자기비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p>
<p><신 설></p>	<p>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 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 의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지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용,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직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인력을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p>	<p>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 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 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용,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직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인력을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p>⑤ ~ ⑦ (생 략)</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p>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p>
<p>4. 공치사자본인이 직정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p> <p>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p> <p>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p> <p>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4. 피정후견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p> <p>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p> <p>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p> <p>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p> <p>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p> <p>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채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5서</p>

<p>[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제18조(인감대장의 열람 등) ①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발급 내역에 한정한다)은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자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p> <p>1. 급치상신고 또는 한정치상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p>	<p>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물,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임원으로 직할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 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임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 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 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p> <p>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p>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p>
<p>2. 사망하거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제1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금지자산신고 또는 한정자산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임 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 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p> <p>④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p> <p>제18조의2(원한의 위임) ① 증명청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음장·판장동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p>	<p>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p> <p>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 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p> <p>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p> <p>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 한 서류의 사본(전자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 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 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p> <p>-----</p> <p>-----</p> <p>④ 제1항제5호의</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18조의2(원한의 위임) ① ----- 제14조의4</p> <p>-----</p> <p>-----</p> <p>-----</p>

3. 인감증명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 안건번호 18-0056

3. 인감증명법 별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p>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p> <p>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임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가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환성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p> <p>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지만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p> <p>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p>	

3. 인감증명법 별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p>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별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p> <p>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p> <p>※ 법령장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4. 인감증명법 참조 조문	
<p>인감증명법 시행령</p> <p>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p> <p>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p>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p> <p>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임회하여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 7. 5.></p> <p>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p>	<p>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p> <p>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①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0872, 판결 : 항소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받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전문】 【원 고】	(중략) 가. 피고 2 위 인감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소외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에서 乙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범 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범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登記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甲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결국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에게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甲이 제시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이</p>	<p>에서 乙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범 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범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登記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甲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결국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에게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p>	<p>이러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박현진)</p> <p>【피 고】</p> <p>수원시 외 3인 (소송대리인 정 부법무공단 외 1인)</p> <p>【전문종결】</p> <p>2011. 8. 31.</p> <p>【주 문】</p> <p>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2011.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p>	<p>1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등 소의 1을 사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p> <p>나. 피고 수원시</p> <p>인감증명은 인감증명 신고인이 정차 법률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인감증명법 제3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인 인감인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단),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511 판결 등 참조).</p> <p>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등 참조).</p>	

<http://www.law.go.kr/LSW/prec1nfo.P.do?mode=0&precSeq=1587>
61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 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않은 채 乙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감 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丙과 丁에게는 범무사 丙이 직접 해야 하는 본인 확인의 판단 작용을 직원인 丁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들과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범무사 丙 및 그 직원인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게도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p>	<p>나. 피고 수원시, 피고 3, 4는 피고 2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의 피고 수원시, 피고 3,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수원시,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수원시, 피고 3, 4가 부담한다.</p> <p>4. 제1항은 기집행할 수 있다.</p>	<p>이 사건의 경우 피고 2로부터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피고 2가 제시한 소외 1 명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여 피고 2를 소외 1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인감 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p>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②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 항소</p> <p>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24918</p>	<p>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위의 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의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p>	<p>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소의 1 범무법민 2006. 11. 3. 작성의 중서 2006년 제6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p> <p>2. 이 법원이 2007가기44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7. 7.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p> <p>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p> <p>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중략)</p> <p>나. 1-1번 쟁점에 대한 판단(자진사장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인지 여부)</p> <p>살피건대, ① 통상 우리나라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가리키고도 봄이 상당한 점, ② 인감증명법 제2조, 제12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인감증명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위와 같은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모두 동법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 ④ 일정한 공증증서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등 공증증서의 효력이 매우 강하고, 따라서 공증인법 제27조, 제31조 등에서 각 나라마다 인감등록 및 증명제도가 상이한데, 만일 위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면 외국의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의 기본적 양식(인감증명서 용지의 구성, 색깔, 위조방지 음영의 배치, 인영의 색깔, 글씨 모양 등)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공증인이 그 위조 여부를 감파할 우려가 상존하며, 이러한 문제는 공증서에 부여된 강력한 힘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것인 점, ⑥ 국내에 인감신고를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25조 등에 따라 사서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점, ⑦ 원고 소송대리인</p>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③ 위 판례의 상고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판결 http://www.law.go.kr/LSW/prec1infoP.do?mode=0&precSeq=1400 58	[1] 공증의 목적·방법 및 효력과 그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 확인절차의 중요성, 인감증명의 법령상 담당기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달리 법령이나 국제 협약 등에 의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서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는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공증업무에 대한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갑 제42호증)에 의하더라도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그 시행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감등록증명서는 외견상 일본국 대판부 지전시경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의 3의 원고에 대한 대리권 증명에 필요한 증명서(연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가 흠결되어 이후 그 흠결을 추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공증인법 제3조 참조).	위 각 법령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공증의 목적·방법 및 효력과 그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 확인절차의 중요성, 인감증명의 법령상 담당기관, 정부조직법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달리 법령이나 국제 협약 등에 의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는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인감증명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특별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만으로는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p> <p>[2] 일본국 대판부 지진시장 명의로 작성된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p>		

Ⅲ. 서명확인법 조사 분석

1. 서명확인법 개정 사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_현행 법률 5조.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삭제 <2016. 12. 2.>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5조 개정 사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1호, 2016. 1. 27.,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 12. 2., 일부개정]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p> <p><신 설></p> <p>② 신청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p> <p>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p> <p>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p> <p><삭 제></p> <p>③ ----- 제1항-----</p> <p>----- 발급기관-----</p> <p>-----</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법률 6조

-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捺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 개정 사항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1호, 2016. 1. 27., 일부개정]</p>
<p>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1. 교차신청자가 신청한 경우</p> <p>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p> <p>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p> <p>4.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신설></p> <p>⑥ (생략)</p>	<p>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 ----- ----- ----- ----- ----- -----</p> <p>② ~ ④ (원행과 같음)</p> <p>⑤ ----- ----- -----</p> <p>1. 피성년후견인이 ----- -----</p> <p>2. 미성년자 ----- -----</p> <p>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p> <p>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p> <p>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p> <p>⑥ (원행과 같음)</p>

현행 법률 7조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 1. 27.>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27.>
-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 1. 27.>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7조 개정 사항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1호, 2016. 1. 27., 일부개정]</p>
<p>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③ (생략)</p> <p>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산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행정기관등은 제5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미성년자인 ----- ----- -----</p> <p>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률 8조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8조 개정 사항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1호, 2016. 1. 27., 일부개정]</p>
<p>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② (생략)</p> <p>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권자인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기관”으로 본다.</p> <p>⑤ 승인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1. 금지산자가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직권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p> <p>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기관”으로 본다.</p> <p>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서명확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	-	-	-
			비 고
			-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p> <p>①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p>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삭제 <2014. 12. 3.> <p>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등기사항증명서 	<p>서명확인법</p> <p>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p> <p>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5. 12. 30.></p>		<p>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p>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p>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업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無印)(捺印)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 7. 26></p>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할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p>	<p>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捺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p>
<p>1. 거래상대방의 성명(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거래상대방의 주소(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p>3.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p> <p>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p> <p>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p> <p>2.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p> <p>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체류지</p> <p>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p> <p>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p> <p>⑧ 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p>	<p>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p>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p> <p>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암호 입력 2. 제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3. 삭제 <2014. 12. 3.> <p>⑦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번호 2. 발급일시 3. 성명 4. 용도 	<p>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3. 서명확인법 참조 조문	
<p>5. 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기관</p> <p>6. 민원인이 본인 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발급증을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사람</p> <p>⑧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7. 26.></p>	<p>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공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2조(열람의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법적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서명확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	-	-	-

5. 국회법률안			
제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2011.06.30. 국회전자도서관	인간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려는 것임.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근거 및 발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열람 금지(안 제12조)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안 제13조)	첨부_181249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6.09.21. 국회전자도서관	제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시장·군정·읍장 또는 면장에게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_2002379	

IV. 부동산등기법 조사 분석

1. 부동산등기법 (개정 사항 없음)

[시행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일부개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부동산등기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	-	-	-	-

3. 부동산등기법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p>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p>

3. 부동산등기법 참조 조문	
<p>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照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4. 부동산등기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239 판결 (출처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239 판결 [소유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정한 증명에 의하여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그러한 증명이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정한 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그러한 증명이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4. 부동산등기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증명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호에서 그러한 증명에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갑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갑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p>【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p> <p>【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8813 판결</p> <p>【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p> <p>></p>	<p>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갑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그 갑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p> <p>따름이지 위 규정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p> <p>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증명발급 거부행위를 합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 내지 부동산등기법 제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p> <p>행정청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취득세부과 관계서 류가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증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종한 것이지 그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에게 따로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증명을 발급할 조처상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위 규정이 사문화된거나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권리구제 또는 법적 보호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p> <p>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법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V. 개인정보 보호법 조사 분석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신 설></p> <p>2. ~ 7. (생략)</p> <p><신 설></p>	<p>제2조(정의)</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문 또는 나뭇잎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p> <p>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 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2. ~ 7. (현행과 같음)</p> <p>8. “과한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생략)</p> <p>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생략)</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p> <p>⑧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의 추천하는 자를,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열</u></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 --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 -- <후단 삭제></p> <p>② 보호위원회의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 제1항의 심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박사점사변호사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칙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p>
<p><신 설></p>	<p>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세로이 개시된다.</p>
<p><신 설></p>	<p>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재기간 신신장에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p>
<p><신 설></p>	<p>제7조의6(금지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p>
<p><신 설></p>	<p>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상복래념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신 설></p>	<p>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시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p>
<p><신 설></p>	<p>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응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시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장이 심의의결하는 사항</p> <p>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p>

<p>개인정보 보호법</p> <p>[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p> <p>[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p> <p>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해분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p>	<p><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응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출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락처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의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의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략)</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호위원회의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의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생략) <u><신설></u></p>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1. (생략)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②·③ (생략) <u><신설></u></p>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 -----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② ----- ----- ----- . ----- ----- ----- ----- ----- -----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1. ~ 3. (생략)</p> <p>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5. ~ 9. (생략)</p> <p>③ (생략)</p> <p>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이용추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 9.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 - - - - 보호위원회가 고시로</p> <p>-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생략)</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③ ~ ⑦ (생략)</p>	<p>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 - - - 보호위원회가 고시로</p> <p>- - -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③ (생략)</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위원회는 - - - - -</p> <p>-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p> <p>1. 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③ (생략)</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⑤ 보호위원회는 -----</p> <p>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p> <p>1. 2. (현행과 같음) -----</p> <p>3. ----- 보호위원회가 고시된 -----</p> <p>② ③ (현행과 같음) -----</p> <p>④ 보호위원회는 -----</p> <p>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p></p>
<p><신설></p>	<p>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p>
<p><신설></p>	<p>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의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된 뒤 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 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신 설></p>	<p>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응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4. ~ 8.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p>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개인정보의 파기철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위원회는 -----</p>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p> <p>----- 보호위원회에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호위원회는 -----</p> <p>④ 보호위원회는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포함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 ⑧ (생략)</p>	<p>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호위원회는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위원회는 -----</p> <p>-----</p> <p>⑤ 보호위원회는 -----</p> <p>-----</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 ⑧ (생략)</p>	<p>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p> <p>-----</p> <p>-----</p> <p>-----</p> <p>----- <u>보호위원회</u>에 -----</p> <p>----- <u>보호위원회</u>가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보호위원회</u>는 -----</p> <p>----- <u>의견</u>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보호위원회</u>는 -----</p> <p>-----</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34조(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①·② (생략)</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34조(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보호위원회</u> -----</p> <p>----- <u>보호위원회</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u>보호위원회</u>는 -----</p> <p>-----</p> <p>-----</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진부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원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생략)</p>	<p>② 보호위원회는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 - - - -</p> <p>③ 보호위원회는 - - - - -</p> <p>- - - - -</p> <p>- - - - -</p> <p>④ 보호위원회는 - - - - -</p> <p>- - - - -</p> <p>⑤ (현행과 같음) - - - - -</p>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 - - -</p> <p>-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금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 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p></p> <p><신설></p>	<p>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p> <p>- - - - -</p> <p>- - - - -</p> <p>에 따른 동의 철회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p></p> <p>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서 경제·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권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권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신 설></p>	<p>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에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9조의11(국내데이터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데이터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데이터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데이터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p> <p>1. 국내데이터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데이터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데이터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신 설></p>	<p>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초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신 설></p>	<p>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39조의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항기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로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p>
<p><신 설></p>	<p>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신 설></p> <p>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p> <p><신 설></p> <p>제8장 보칙</p> <p><신 설></p> <p><신 설></p> <p>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p> <p><신 설></p>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용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p> <p><삭 제></p> <p>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p> <p><삭 제></p> <p>제9장 보칙</p> <p>제56조의2(적용 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비밀유지 등) - - - - - - - - - - - - - - -</p> <p>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 - - - -</p> <p>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2. 3. (생 략)</p> <p>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보호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④ (생 략)</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u>보호위원회는</u> 인정하면</p> <p>② <u>보호위원회는</u></p> <p>③ ④ (현행과 같음)</p>
<p>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p>	<p>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u>보호위원회에</u></p> <p>② <u>보호위원회는</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보호위원회는</u></p>
<p>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 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u>보호위원회는</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보호위원회는</u></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③ (생략)</p> <p>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방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판야 -----</p> <p>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보호위원회는 -----</p> <p>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방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② ~ ④ (생략)</p>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p> <p>--- --</p> <p>--- --</p> <p>② <u>보호위원회</u>는</p> <p>--- --</p> <p>--- --</p> <p>---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6조(결과와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파테로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66조(결과와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p> <p>--- --</p> <p>--- --</p> <p>--- --</p> <p>공표</p> <p>---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p> <p>--- --</p> <p>--- --</p> <p>--- --</p> <p>보호위원회</p> <p>--- --</p> <p>--- --</p> <p>--- --</p> <p>--- --</p> <p>보호위원회</p> <p>--- --</p> <p>--- --</p> <p>--- --</p> <p>③ 보호위원회는</p> <p>--- --</p> <p>--- --</p> <p>--- --</p>
<p>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신 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신 설>	<삭 제> 제10장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4. (생 략)	제7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 ----- 3.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의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5. 6. (생략)</p> <p>제73조(별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p> <p><u><신설></u></p> <p>2. 3. (생략)</p>	<p>5. 6. (현행과 같음)</p> <p>제73조(별칙) -----</p> <p>1. -----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p> <p>-----</p> <p>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p> <p>2. 3. (현행과 같음)</p>
<p>제75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p> <p>4의2. ~ 5. (생략)</p> <p>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생략)</p> <p>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p>	<p>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4의2. ~ 5. (현행과 같음)</p> <p>6. -----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p> <p>7. (현행과 같음)</p> <p>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음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p>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p><신 설></p> <p>8. ~ 12. (생략)</p>	<p>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p> <p>8. ~ 12.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p>
<p><신 설></p>	<p>12의3.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p>
<p><신 설></p>	<p>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신 설></p>	<p>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p>
<p><신 설></p>	<p>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3. (생략)</p>	<p>13.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p> <p>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p>	<p>③ - - - - - 2천만원 - - - - -</p> <p>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침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p>
<p>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p> <p>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성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권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5호, 2017. 10. 17., 일부개정]</p>
<p>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생략)</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결과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결과 등) ① ----- 제35조제1항----- ----- 요구하면 ----- -----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5호, 2017. 10. 17., 일부개정]</p>
<p>1. ~ 5. (생략)</p> <p>②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0일을 말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의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신 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장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장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p> <p>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0일을 말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의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p> <p>-----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p> <p>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 은 “정정 또는 삭제” 로 본다.</p>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55호, 2017. 10. 17., 일부개정]
<p>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저장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 제공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 - - - - 알리 - - - - - - - - - - ③ - - - - - - - - - - 요구 -</p>
<p>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금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금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금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금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금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금지 등) ① - - - - - - - - - - 요구하러던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반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 - - - -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금지”로 본다. ② - - - - - - - - - - 요구 - - - - - - - - - - - - - - -</p>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 9. 29., 일부개정]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 9. 29., 일부개정]</p>
<p><신설></p>	<p>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본조신설 2016.9.29]</p>
<p>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p>1. 2. (생략)</p>	<p>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제23조제1항 - 1. 2. (생략과 같음)</p>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 - - - - - - - - 정보 - - - - - - - - - -</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 9. 29., 일부개정]</p>
<p>1. 2.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법 제25조제4항 -----</p> <p>----- 법 제25조제4항 -----</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25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운영·관리 -----</p>
<p>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 제30조제1항제8호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p>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p> <p>-----</p>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 9. 29., 일부개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별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 4. (생략)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 ----- 1. ----- ----- 민감정보 ----- 2. ~ 4.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6호, 2015. 12. 30., 일부개정]</p> <p>제5조(전문위원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제5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0명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p>	<p>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6호, 2015. 12. 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생략)</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p> <p>1. (생략)</p> <p>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생략)</p> <p>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p> <p>③ (생략)</p> <p>〈신설〉</p>	<p>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 장)</p> <p>-----</p> <p>③ (현행과 같음)</p>
<p>-----</p>	<p>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776호, 2015. 12. 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신 설></p>	<p>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판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5항 각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용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6호, 2015. 12. 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p> <p>2. ~ 4. (생략)</p> <p>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괴 및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괴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인 필요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p> <p>1. ~ 4. (현행과 동일)</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p> <p>1. ~ 4. (현행과 동일)</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생략)</p> <p>② 법 제34조제3항 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한국인터넷진흥원</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776호, 2015. 12. 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7370호, 2016. 7. 22., 일부개정]</p>
<p><신 설></p>	<p>제48조의2(당연직위원) 별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별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별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 분쟁조정위원회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0조(사무국 등) ① 별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별 제40조제8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p>	<p>제50조(사무기구) 별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p>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폐지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①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기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와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접수·배정 담당자”라 함)와 배정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별 담당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구분주소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고(주석: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해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번호 19-0152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6호기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석: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해 참조)	
			한편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자들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p>②단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p>	<p>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임추자대표회의가 「공공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의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p>	<p>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p>	<p>가. 질의 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혹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주석: 헌법재판소 2017. 12. 28. 결정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결정해 참조] 그런데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직접 제공받아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활용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유희적인 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직접 제공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를</p>	<p>□ 안전번호 18-0583</p>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p>회 답</p> <p>열람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차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p> <p>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인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주석: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명함), 59841(명함)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p> <p>나. 길의 나에 대해</p> <p>「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p>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이 유	비 고
③판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보호법, 제1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	
③판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보호법, 제1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의를 부담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4조에서는 준비서면에는 공적 또는 방어의 방법(제4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적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제5호) 등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5조에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안전번호 17-0506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p>이 사인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p> <p>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 정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참조).</p> <p>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임베베오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 등을 들 수 있는데(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례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 회는 등등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서는 문서제출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p>	

4.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해석례			
제 목	질의요지	회 답	비 고
		<p>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p> <p>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첨부무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p> <p>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8호의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제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p> <p>따라서,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p>	

5. 개인정보 보호법 참조 조문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p> <p>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구 또는 방법과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p>

5. 개인정보 보호법 참조 조문	
<p>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p> <p>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p> <p>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p> <p>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p> <p>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p> <p>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p> <p>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p>

5. 개인정보 보호법 참조 조문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금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①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35,59841 판결</p> <p>(출처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 59834, 59835, 59841 판결 [손해배상(가)-손해배상(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p>	<p>[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에 의사에 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치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다.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	<p>【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20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승우)</p> <p>【피고, 피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옌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p> <p>【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 111485, 111492 판결</p> <p>【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p>	<p>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치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 <p>(중략)</p> <p>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개인정보는 소의 1에 의하여 유출된 후 편집과정을 거쳐 판매처 물색 부락을 위한 목적으로 공범들과 소의 5에게 CD, DV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되었고, 이후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언론계보 명목으로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계보 직후 이 사건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친 관련자들로부터 그 저장매체의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이 사건 개인정보 시중에 또는 변호사에게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어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범인들의 열람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저장·편집·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관계자들도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존재 자체와 규모, 그 정확성을 확인한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도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④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적이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더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범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p>【전문】</p> <p>【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p> <p>【상고인】 검사</p> <p>【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p>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2가 아파트 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소외인 등 일부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불,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임동의서'라 한다)를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 검토를 위해 교부받은 다음 2014. 2. 19.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 피고인 1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며, 그 적용범조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이다.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차별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규범주체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강에 따라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p>	<p>【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p>	<p>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이 사건 해임통의서에 기재된 임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p> <p>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p> <p>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그런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p>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p>		<p>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범위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주체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
			<p>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어 제7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피고인 2는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p>

6. 개인정보 보호법 판례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주문	이유
			<p>이마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은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p> <p>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현안분석 20-03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2020년 6월 27일 인쇄
2020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계 흥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0802-32-1 93360



박 광 동(책임)

학 력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제 모형에 관한 연구
- Laws and Systems of Social Services Vouchers in Korea
- A Study on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9-11-90802-32-1

값 8,000원